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(박수빈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

□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

의안번호 제2818호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
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
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의원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,
심의회 회의록 등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
처리규정을 명확히 하며, 시의회 의결을 받은
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 이행 상황의 주기적인 점검
및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
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
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에 참고될 의견을 제공받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로서, 이 중 20억 이상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의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‘변경 또는 취소사업’이 적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
- 공유재산심의회에 임명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.

- 다만, 공유재산심의회 시의원 참여에 따라
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 자문단계에서 사전심의를
받은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하여
시의회 의결로 확정함에 따라
동일사업에 대한 자문과 의결 참여로 인한
자문의 독립성 문제와 중복심의 문제가 우려되며,
-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후에도
사업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
변경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의결을 받도록
조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
규정 신설에 따른 타당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
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
2025. 6.

재무국장 이 혜 경